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6. 27 선고 2022가단5169792 판결 [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우

담당변호사 박형권, 이주환

피 고 1.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

담당변호사 윤상구

2.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

변 론 종 결 2024. 5. 23.

판 결 선 고 2024. 6. 27.

주 문

1.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,693,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7. 9.부터 2024. 6. 27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.3.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/4은 원고가,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,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 주식회사(이하 '피고 B')는 65,115,7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7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피고 C 주식회사(이하 '피고 C')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65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. 7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0. 10. 29. 피고 B와 사이에, 원고가 위 피고에게 영천시 D 소재 E(주) F공장(이하 '이 사건 공장') 신축공사(이하 '이 사건 공사')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. 설계변경 등을 동반한 수차례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20. 10. 29.부터 2021. 7. 30.까지, 공사대금은 650,000,000원(부가가치세, 설계변경정산금 별도)으로 결정되었다(이하 '이 사건 도급계약').

나. 피고 B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, 원고는 2021. 8. 27. 사용승인을 받았다.

다. 피고 B은 2021. 9. 15. 피고 C와 사이에 피보험자 원고, 보험기간 2021. 8. 27.부터 2023. 8. 26.까지, 보험가입금액 65,000,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 후 하자에 관한 이행(하자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, 5, 6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피고 B에 대한 청구

가.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앞서 본 증거들과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 G에 대한 사실조회결과(이하 '감정인의 각

감정결과')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공장에 다음과 같이 합계 49,693,600원 상당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감정 항목		공사비(원)	하자발생시기
1	외부 바닥균열 및 침하(마당)	39,508,040	사용승인 전 하자
2	외부 주변 담장 균열	391,710	사용승인 전 하자
3	외부 바닥(저류조 상부) 구배불량 - 단차발생	2,578,070	사용승인 전 하자
4	연못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용불가 - 내부로 오염수 유입 및 연못 바닥 방수 불량	591,250	사용승인 전 하자
5	공장 내부 바닥 구배 불량	하자아님	사용승인 전 하자
6	저류조 펌프 시공불량	2,545,730	사용승인 전 하자
7	우수배관 시공 불량	2,180,970	사용승인 전 하자
8	브래싱 접합부 볼트 미시공	26,510	사용승인 전 하자
9	철골 기둥 하부 무수축물탈 일부 미시공	953,810	사용승인 전 하자

10	담장 볼트 일부 미시공	79,530	사용승인 전 하자
11	공장 내부 별채 철골 브래싱 일부 미시공	396,990	사용승인 전 하자
12	담장 콘크리트 시공 불량	440,990	사용승인 전 하자
	합 계	49,693,600	

나.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

원고는 감정항목 순번 5 공장 내부 바닥 구배 불량 하자(하자보수비 15,422,110원)도 이 사건 공장의 시공상 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감정인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, 감정인은 공장 내부 바닥에 구배가 시공되어 있지 않고 이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게 하는 기능상·안전상의 미시공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관하여 하자보수비 15,422,110원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 그러나 위 해당 부분은 건축공사시방서 및 공사설계도면(을 제4호증)상 창고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구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, 도면상 배수로로 시공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구배가 함께 시공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(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수호가 창고에서 이루어지는 간단한 물청소 등을 예정 내지 대비한 용도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), 위 피고는 이 부분을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시공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, 이 부분 항목은 시공상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

1) 위 피고는 감정항목 순번 3 외부 바닥(저류조 상부) 구배불량 - 단차발생 항목에 관하여, 저류조 상부는 구배가 없는 구조로 설계되었고 그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시공상 하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, 감정인은 외부마당에 20mm정도의 단차가 발생하여 침하가 이루어진 상태로서 이를 보수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침하로 인한 변위발생으로 저류조 등 다른 구조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, 국토부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콘크리트 포설 시 갖추어야 할 경사나 4~6m 간격의 줄눈 설치 등도 누락되었다고 보아 이를 기능상·안전상 하자로 판단하였는바,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. 또한 감정인이 하자 항목을 특정한 내용이나 그 보수방법 등을 볼 때 이 부분 항목이 감정항목 순번 1 외부바닥 균열 및 침하 항목(하자보수비 39,508,040원)과 중복된다고 보기도 어렵다.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2) 위 피고는 감정항목 순번 6 저류조 펌프 시공불량 항목에 관하여, 원고의 운용상 과실로 인한 고장이 의심되므로 시공상 하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. 그러나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, 감정인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저류조 펌프 고장 상태 등을 확인한 후 이를 시공상 하자(기능상 · 안전상 하자)로 판단하였는바 감정인의 위와 같은 판단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. 또한 위 감정결과나 제출된 각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부분 하자가 원고의 운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.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3) 한편 위 피고는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4 제2항 제1호, 제4조 제2항 제2호, 제5호, 제11호 제1항, 제2항 제1호, 7호 등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. 그러나 위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규정들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위 피고의 위 주장이 상계항변으로서 그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(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바도 없다),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.

라. 소결론

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49,693,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. 7. 9.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. 6. 27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 C에 대한 청구

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존재하는 각 하자에 대하여 피고 C도 이행(하자)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증한도인 65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과 공동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 그런데 피고 C은 이 사건 공장의 사용승인 후 하자에 대해서만 피고 B과 이행(하자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감정인의 각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제2항에서 인정된 각 하자는 모두 사용승인 전 하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, 달리 사용승인 후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.

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,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.

판사 백상빈